

중국 · ASEAN, FTA 체결과 주요 내용

2004년 11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13억의 중국 인구나 5억의 ASEAN 인구 등 총 18억 인구를 한데 묶는 거대경제권 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 ASEAN FTA는 인구 18억 4,000만명(세계 1위), 역내 국내총생산(GDP) 2조 3,000억 달러, 역내 교역규모 1조 6,600억 달러(세계 3위)의 거대경제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ASEAN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상품양허 방식 등 중국과 ASEAN간 체결한 FTA를 분석하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 ASEAN FTA 추진 배경, 조기자유화 내용, 협정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본다.

1. FTA 추진배경 및 경과

중국은 ASEAN¹⁾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기감 불식, ASEAN과의 교역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8월 설립된 동남아시아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의 하나로서 설립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었다.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1995년 1월 베트남, 1997년 7월에 라오스와 미얀마가,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대 이전에 가입한 인도네시아

중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주도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ASEAN을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1990년대 말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은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에게 상호간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이후 실시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양측은 2001년 11월 중·ASEAN FTA체결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0년 이내에 중·ASEAN FTA를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FTA 추진과정에서 캄보디아 등 신규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좀더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 취급을 하고, 상호협약에 의해 조기자유화(early harvest) 품목을 결정, FTA 추진을 가속화시키기로 하였다.

중·ASEAN FTA 체결의 법률적 기초인 기본협정에는 상품분야 협상은 2003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며, 서비스 및 투자분야는 2003년 협상을 개시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1년 이상의 협상을 거쳐 양측은 2004년 11월 FTA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거대경제권 탄생을 알리게 된다.

기본협정 4조에서는 관세 인하를 품목에 따라 일반트랙(normal track)과 민감트랙(sensitive track)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은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까지(일부 품목은 2012년까지), 신규 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까지(일부 품목은 2018년까지) 합의된 인하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민감트랙 품목 역시 협약에 의해 결정된 일정에 의해 인하되는데, 대상 품목은 양측의 협약에 의해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6개국을 ASEAN 기존회원국 또는 ASEAN 6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1990년대에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ASEAN 후발가입국(newer ASEAN Member States)로 불린다. 그리고 이들 국가명의 머리글자를 따서 CLMV 국가로 부르기도 한다.

2. 조기자유화 내용

양측은 ASEAN·중국 간 FTA를 가속화시키기 FTA 이행이전에 조기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은 <표 1>과 같다. 대상 품목은 HS 1~8류로서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제제품, 기타 동물제품, 살아있는 수목, 식용채소류, 식용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실제 조기 자유화가 적용되는 품목은 HS 8단위 또는 9단위 품목들이다.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과 참여 국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조기 자유화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부 ASEAN 회원국가간에 실시된다. 기본협정문 체결당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은 중국과 조기 자유화 협상을 종료하였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협상을 종결짓지 못하였다.

기본협정에는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을 확정짓지 못한 국가는 2003년 3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HS 1~8류에 속하더라도 회원국이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회원국은 언제라도 예외목록에 있는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본협정 부속서 3에서는 관세 인하 및 철폐범위와 일정에 따라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제1품목군은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이 15% 이상의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들이다. ASEAN 후발 참여국은 30% 이상의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1품목군에 포함된다. 제2품목군은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이 5~15%의 MFN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들이다. ASEAN 후발

참여국들의 경우는 15~29%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들이 2품목군에 포함된다. 3품목군에는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은 5% 미만, ASEAN 신규 회원국은 15% 미만의 MFN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들어 있다.

표 1 조기 자유화 적용대상 품목

HS 번호	품목군
01	산동물
02	육과 식용설육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품, 조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6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0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자료: ASEAN 사무국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의 관세철폐일정은 <표 2>와 같다. 제3품목군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지만, 2품목과 1품목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는 각각 2005년 1월 1일과 2006년 1월 1일 이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MFN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철폐가 늦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ASEAN 후발 참여국의 관세 인하일정은 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은 2004년 1월 1일부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영세율로 한다는 계획이다.

표 2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의 조기 자유화조치 품목 관세철폐 일정

	2004년 1월 1일 이전	2005년 1월 1일 이전	2006년 1월 1일 이전
제1품목군	10%	5%	0%
제2품목군	5%	0%	0%
제3품목군	0%	0%	0%

자료: ASEAN 사무국

표 3 ASEAN 후발 참여국의 조기 자유화조치 품목 관세철폐 일정

구분	국가명	2004.1.1	2005.1.1	2006.1.1	2007.1.1	2008.1.1	2009.1.1	2010.1.1
1품목군	베트남	20%	15%	10%	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20%	14%	8%	0%	0%
	캄보디아	-	-	20%	15%	10%	5%	0%
2품목군	베트남	10%	10%	5%	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10%	10%	5%	0%	0%
	캄보디아	-	-	10%	10%	5%	5%	0%
3품목군	베트남	5%	5%	0-5%	0-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5%	5%	0-5%	0%	0%
	캄보디아	-	-	5%	5%	0-5%	0-5%	0%

자료: ASEAN 사무국

기본협정에 제시된 조기 자유화조치로부터 제외되는 품목은 <부속서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ASEAN 회원국 중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은 중국에 대해 예외품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에 대해 어떤 품목도 예외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각각 30개(HS 8단위 기준)와 15개(HS 9단위)의 농산물을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켰다<표 4> 및 <표 5>. 캄보디아가 제외한 주요 품목은 산돼지, 가금육, 신선 또는 냉장 채소류(토마토, 양파, 상

추, 당근 등), 과일(오렌지, 파인애플, 멜론, 파파야, 수박) 등이다. 베트남의 예외품목은 가금육, 레몬, 그레이프 푸르트, 감귤류 등이다.

표 4 캄보디아의 제외품목

번호	HS 번호	품목명
1	0103.92.00	중량 50kg 이상의 산돼지
2	0207.11.00	신선 또는 냉장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3	0207.12.00	냉동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4	0207.13.00	신선 또는 냉장한 가금류의 절단 및 설육
5	0207.14.10	냉동한 가금류의 다리
6	0207.14.20	냉동한 가금류의 가슴
7	0207.14.30	냉동한 가금류의 날개
8	0207.14.90	기타 냉동한 가금류의 절단육
9	0301.93.00	살아있는 연어
10	0702.00.00	신선 또는 냉장한 토마토
11	0703.10.10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12	0703.20.00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
13	0704.10.10	신선 또는 냉장한 꽃양배추 및 브로콜리
14	0704.10.20	신선 또는 냉장한 방울다다기 양배추
15	0704.90.10	신선 또는 냉장한 양배추
16	0704.90.90	신선 또는 냉장한 배추
17	0705.11.00	신선 또는 냉장한 절구상추
18	0705.19.00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 상추
19	0706.10.10	신선 또는 냉장한 당근
20	0706.10.20	신선 또는 냉장한 순무
21	0706.90.00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 무
22	0708.20.00	신선 또는 냉장한 콩
23	0709.90.00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채소
24	0801.19.00	신선 또는 냉장한 코코넛
25	0804.30.00	신선 또는 냉장한 파인애플
26	0804.50.00	신선 또는 냉장한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27	0805.10.00	신선 또는 냉장한 오렌지
28	0807.11.00	신선수박
29	0807.19.00	신선 기타 멜론
30	0807.19.20	신선 파파야

자료: ASEAN 사무국

표 5 베트남의 제외품목

번호	HS 번호	품목명
1	010511900	중량 185g 이하 가류
2	010592900	중량 2,000g 이하의 가금류
3	010593000	중량 2,000g 이상의 가금류
4	010599900	기타 가금류
5	020711000	신선 또는 냉장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6	020712000	냉동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7	020713000	신선 또는 냉장한 가금류의 절단 및 설육
8	020714000	냉동한 가금류의 절단 및 설육
9	020726000	신선 또는 냉장한 칠면조의 절단 및 설육
10	020727000	냉동한 칠면조의 절단 및 설육
11	040700100	신선 종란
12	040700900	기타조란
13	080530000	신선 또는 건조한 레몬과 라임
14	080540000	신선 또는 건조한 그레이프푸르트
15	080590000	신선 또는 건조한 기타 감귤류의 과실

자료: ASEAN 사무국

한편 중국은 협상을 완료한 모든 ASEAN 국가에 대해 HS 01-08류 모든 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하였지만 ASEAN 국가가 중국에 대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2년 11월 기본협정 서명이후 조기 자유화협상을 벌인 결과 인도네시아와 태국만이 각각 14개(HS 9단위) 및 2개(HS 10단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²⁾.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은 품목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2003년 3월 1일까지 종료하기로 하였다.

2) 인도네시아가 추가한 품목 중 농산물은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HS 090122000), 야자유(HS151311000), 기타야자유(HS151319000), 팜핵유(HS151321000), 기타 팜핵유(HS151329000), 식물성유지와 그 분획물(HS15162000), 동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조제품(HS151790000), 볶은 원상 또는 파쇄한 코코아두(HS18061000) 등 7개 품목이다. 태국이 추가한 품목은 무연탄(HS2701110008)과 코크스(HS2704000904)이다.

3. 중·ASEAN FTA의 주요내용

2004년 11월 9일 서명된 중·ASEAN FTA 협정문은 제1조(정의)부터 제 23조(효력발생)까지 본문 23개조와 3개의 부속서(일반 및 민감품목 양허안, 원산지 규정)로 구성된다.

3.1. 관세 인하 및 철폐

관세인하 또는 철폐는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에 기초한다. WTO 회원국은 200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다. 베트남, 라오스 등 WTO 비회원국은 2003년 7월 1일 현재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관세 인하 또는 철폐대상이 되는 품목은 조기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으로 하되, 일반트랙(Normal track)과 민감트랙(Sensitive track)로 구분된다. 일반트랙 또는 민감트랙으로 분류된 각각의 품목들은 부록 1, 2에 명시된 양허원칙에 따라 철폐 또는 인하된다.

3.1.1 일반트랙의 관세 인하 및 철폐원칙

일반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관세는 표 6과 같은 일정으로 6개국의 기회원국은 2005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신규회원국은 2005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위해 구간대별 인하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빠른 속도로 대폭적으로 관세가 감축된다. 기존 회원국과 중국의 경우 5개의 관세구간대가 적용되어 관세가 20% 이상인 품목은 2005년에 20%에서 2007년에는 12%로, 그리고 2009년 5%로 인하된 뒤 2010년 영세율로 된다. 관세율이 5%이상 10% 미만인 품목은 2005년 5%로 인하된 뒤 2009년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표 6 6개 아세안회원국 및 중국에 대한 일반트랙 양허원칙

X=실행관세율	중·ASEAN FTA 특혜관세			
	2005*	2007	2009	2010
$X \geq 20\%$	20	12	5	0
$15\% \leq X < 20\%$	15	8	5	0
$10\% \leq X < 15\%$	10	8	5	0
$5\% \leq X < 10\%$	5	5	0	0
$X \leq 5\%$	동결		0	0

* 이행 첫 날은 2005년 7월 1일

베트남 및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신규회원국에 대해서는 11개 관세 구간대별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철폐토록 되어있다<표 7> <표 8>. 후발개도국인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회원국보다 5년 더 긴 이행기간과, 더 많은 관세 감축구간대를 부여하여 급작스런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베트남에 대한 일반트랙 양허원칙

X=실행관세율	중·ASEAN FTA 특혜관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0	30	25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17	10	5	0
$25\% \leq X < 30\%$	25	20	20	15	15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0	10	10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5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동결							0

* 이행 첫 날은 2005년 7월 1일

표 8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일반트랙 양허원칙

X=실행관세율	중·ASEAN FTA 특혜관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5	30	30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20	10	5	0
$25\% \leq X < 30\%$	25	25	25	20	20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5	15	15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7**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동 결							0

* 이행 첫 날은 2005년 7월 1일

** 미얀마는 2010년까지 7.5%의 관세 유지 허용

어느 당사국이 일반트랙의 양허계획에 의해 양허를 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당사국들의 양허를 향유할 수 있다. 해당 당사국이 양허약속을 이행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지속된다. 중국·ASEAN FTA협정에서 규정된 관세율은 두 당사자간 우대관세일 뿐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FTA 협정 발효 당시 이미 영세율인 품목은 계속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양허에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하한선에 일치하는 추가적인 관세인하 또는 철폐 약속을 해야 한다.

(1) 아세안 6개국 및 중국

- ① 2005년 7월 1일까지 일반트랙에 분류된 40% 이상의 세번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한다.
- ②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트랙에 분류된 60% 이상의 세번에 대한 관

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한다.

- ③ 각 당사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트랙에 분류된 모든 세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일부 150개를 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관세는 2012년 1월 1일 이전까지 철폐해야 한다.
- ④ 각 당사자는 일반트랙으로 분류된 세번에 대한 관세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완전 철폐한다.

(2) 신규 ASEAN 회원국

- ① 신규회원국 중 베트남은 2009년 1월 1일까지,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10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캄보디아는 2012년 1월 1일까지 일반트랙으로 분류한 상품의 50%를 0~% 수준으로 관세를 낮춘다.
- ②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일반트랙으로 분류된 품목 중 최소한 40%를 2013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 ③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트랙 품목중 관세를 완전 철폐할 품목의 비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 ④ 각 회원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되, 250개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2018년 1월 1일까지 철폐할 수 있다.
- ⑤ 각 회원국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트랙으로 분류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3.1.2 민감트랙의 관세 인하 및 철폐원칙

민감트랙으로 분류되는 세번 수에 다음과 같은 상한을 둔다.

- ① 아세안 기존회원국 및 중국은 HS 6 단위 기준 400개 품목을 초과하지 않고 2001년 무역통계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10%이다.
- ②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HS 6단위 기준 50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베트남은 HS 6단위 기준으로 500개를 넘지 않되, 수입액 기준 상한

선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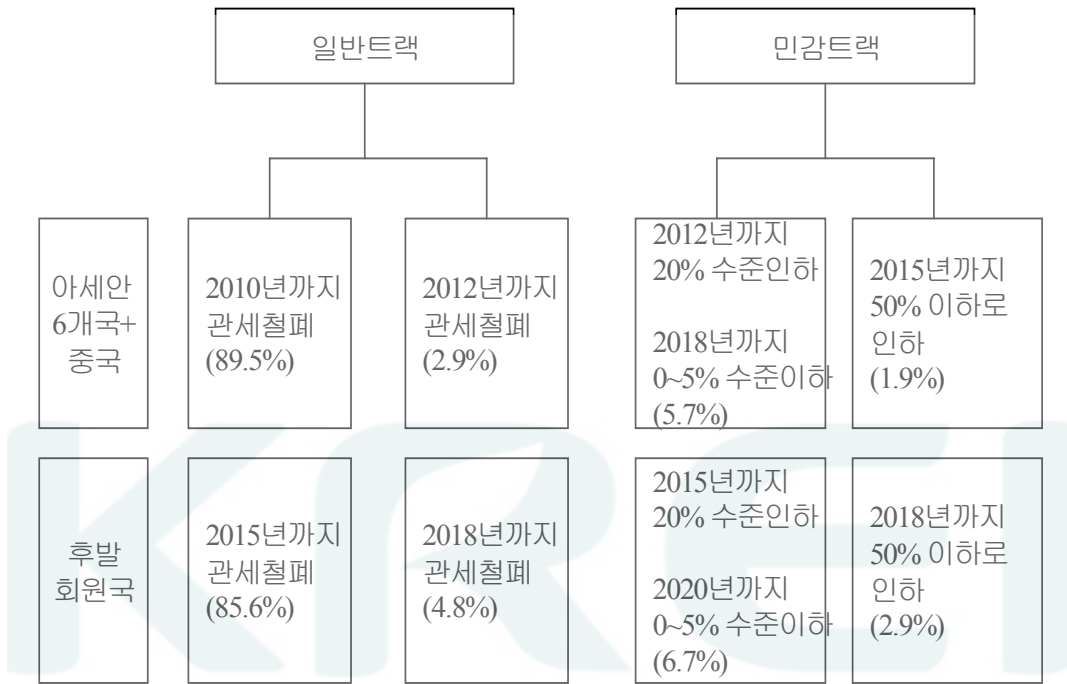
민감트랙으로 분류된 세번은 다시 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로 나뉜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세번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한을 둔다.

- ① 아세안 기존 회원국 및 중국은 민감트랙에 속한 세번의 40% 이하 또는 HS 6단위 기준 100 개 세번 중 적은 것
- ②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민감트랙에 속한 세번의 40% 이하 또는 HS 6단위 기준 150 개 세번 중 적은 것
- ③ 베트남은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세번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민감트랙에 속한 품목의 관세를 인하, 철폐할 것이다.

- ① 아세안 기존 회원국 및 중국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세번의 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고, 2018년 1월 1일까지 0~5% 수준으로 인하한다.
- ②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세번의 세율을 2015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0~5% 수준으로 인하한다.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인하할 민감품의 세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한다.
- ③ 당사국들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세번의 관세율을 아세안 기존 회원국 및 중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아세안 신규 회원국은 2018년 1월 1일까지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그림 1 중·아세안 FTA 상품양허원칙



주 : ()는 HS 6단위 기준 전체품목(5224개) 대비 비율임.

3.2. 수량 제한 및 비관세장벽

각 당사자는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수량제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국은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수량제한 이외의 철폐대상 비관세장벽을 파악한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자국의 수량제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본 협정의 이행에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3. 구제조치

WTO 회원국은 GATT 제19조 및 구제조치에 관한 WTO협정문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FTA 협정문 이행기간중에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이행기간은 협정문 발효시점부터 시작

하여 관세 철폐 또는 인하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후에 종료된다.

각 당사국은 조기자유화 또는 본 협정의 이행의 일환으로서 관세를 양허한 결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어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생산하는 해당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제조치를 발동하는 국가는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한 구제조치는 최장 3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구제조치는 이행기간의 만료(관세철폐 또는 인하 종료 5년후)와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중국·ASEAN FTA의 구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국은 구제조치에 대한 WTO 협정문에 명시된 구제조치의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구제조치에 관한 기타 WTO 규정은 중국·ASEAN FTA 협정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입점유율이 3% 이하인 상대국에게는 그러한 구제조치를 발동하지 않는다.

4. 시사점

중국·ASEAN FTA 체결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ASEAN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비중이 90% 이상이 될 것이란 점이다. 중국·ASEAN FTA에서 양측은 ASEAN 기존 회원국이나 신규 회원국 모두 90% 이상의 품목을 일반트랙에 분류하여 아세안 기존회원국과 중국은 2015년 이내로, 아세안 후발가입국은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추진중이다.

ASEAN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ASEAN FTA보다 한 발 앞선 형태의 FTA를 고려중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ASEAN FTA에

서 일반트랙에 포함될 품목의 비중은 9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SEAN 기존회원국 및 중국의 경우 일반트랙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 시점은 2015년인데, 만일 한·ASEAN FTA가 체결되면 일반트랙의 관세 철폐 완료시점은 2015년보다는 빠른 예컨대 2014년 정도가 될 수 있다.

일반트랙에 비해 관세 인하 폭이 낮고 이행기간도 길게 잡힌 민감트랙의 품목수는 ASEAN 기존회원국과 중국은 400개(HS 6단위 기준), ASEAN 후발가입국은 500개이다. 전체 품목 대비 비율은 각각 7.7%, 9.6%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은 한·ASEAN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품목 비율의 상한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ASEAN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대 상한은 7%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트랙 품목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민감트랙의 품목 비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중·ASEAN FTA에서 초민감품목의 비율을 민감품목의 25%로 분류한 점을 고려할 때 한·ASEAN FTA 협상에서도 초민감품목의 비율이 전체 품목의 2%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중·ASEAN FTA에서 관세양허 제외 품목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FTA는 물론 WTO에서도 쌀 등 중요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협상인 것이다. ASEAN과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ASEAN FTA 협상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나라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협상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ASEAN 국가들이 FTA로 인한 자유화 못지않게 경제협력 등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품양허에서 경제협력을 하나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